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5. 25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
과 장 : 홍 성 재
사무관 : 조 래 청
전 화 : 500-1859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5P)

이 자료는 2010년 5월 2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하반기, 해외농업개발에 72억원 용자 지원

- 밀, 콩, 옥수수 등 주요 수입곡물 애인 유통망 확대 계획 -

- 농림수산식품부(이하 “농식품부”, 장관 장태평)는 밀, 콩, 옥수수 등 주요 수입곡물의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2010년 하반기 해외농업개발비 72억원을 용자지원키로 하고 (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-200호, 2010. 5. 20.) 사업신청서를 6.14~28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.

<해외농업개발사업>

- 밀, 콩, 옥수수 등 수입량이 많은 식량·사료 작물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를 용자` 지원하는 사업
 - * 연리 2.0%, 3년 거치 7년 상환, 2010년 예산 210억원(상반기 138억원 지원)
- 동 사업은 작년(2009) 부터 시작했으며, 진출대상지, 대상작물(품목), 사업방식은 민간 기업이 결정. 정부는 금융, 기술, 외교 등 측면지원

- 용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 (031-420-4202)에 6월 28일(월)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

하고,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해외농업 개발서비스 홈페이지(<http://www.oads.or.kr/main.jsp>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- 농식품부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사업용자심의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(필요시 현지확인)을 통해 빠르면 오는 7월말 경 용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.

- 한편, 농식품부는 초기 투자 리스크가 적고 사업효과가 빠른 “유통형” 방식의 사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, 이 방식의 사업신청자에게 평가점수의 10%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참고 : 해외농업개발 지원 유형

농장형 :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,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종자와 비료·농약비 등 영농비를 지원

유통형 :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·저장·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
지분참여 : 농장형과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

단, 토지의 임차,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자지원 대상에서 제외

<참고1>

2010년 하반기 해외농업개발사업 용자대상자 공모계획

□ 지원계획

- 용자(지원) 규모 : 72억원 내외
 - * 용자규모는 2010년 상반기 선정업체의 용자금 실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용자금리 등 : 연리 2%,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
- 지원한도 :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%까지 지원

□ 사업대상자(자격요건)

- 해외 농·축산물 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
 - * 우선지원 : 유통형, 밀·콩·옥수수, 수출에 제약이 없는 국가 진출대상자 등

□ 지원대상

- (농장형)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,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(종자대·비료대·농약대)
- (유통형)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·저장·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
 - * 토지의 임차,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자지원 대상에서 제외
- (기타)농장형,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

□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(안)

공 고	⇒	용자신청 접수	⇒	용자대상자 선정	⇒	약정체결/지급
농식품부,공사 (5월 말)		농어촌공사 (6.14~6.28)		용자심의회* (7월)		용자대상자,공사 (8월)

* 용자심의회는 1차 서류심사, 2차 발표 및 면접심사 (필요시 현지확인)

<참고2>

농림수산물부공고 제2010-200호

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하반기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의 용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5월 20일
농림수산물부장관

2010년 하반기 해외농업개발사업 용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

1. 지원 계획

- 하반기 지원규모

사업명	용자규모	사업(용자)대상자
○ 해외농업개발	72억원 내외	해외농업개발사업자

* 용자규모는 2010년 상반기 선정업체의 용자금 지급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용자금리 등 : 연리 2%,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
- 사업자별 지원한도 : 지원대상(사용용도) 소요사업비의 70%를 원칙으로 함. 다만, 사업자별 용자지원 한도액/비율은 예산 규모, 용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용자심의회에서 결정
- 용자업무 대행기관 : 한국농어촌공사

2. 사업대상자

- 해외에서 농·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(이하 “해외농업개발사업자”라고 함)

- 2010년도의 경우 용자 신청기간 이전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·접수한 자도 용자신청 가능
- *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대상 농·축산물 :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한 산물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-332호, 2009.9.14)

3. 자격 및 요건

-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
-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·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,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
- 타당한 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있으며, 담보*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
 - * 담보 :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, 담보의 종류는 용자업무대행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
 - 2010년은 시중은행 지급보증서와 서울보증보험의 이행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한정
-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용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
-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
- 밀·옥수수·콩 등 식량·사료 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
-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,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, 수출이 가능 하도록 제도·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
 - 식량 순수입 빈곤국(식량원조수혜 등),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·국의 여행 등에 불안 요소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수급조절,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(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)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
- 식량·사료 작물의 농산물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“유통형”사업에 대해서 심의시 10%이내 가점 부여 등 우선 지원
- ※ 농업법인의 경우 “농림수산업 실시규정(훈령 제99호, 2009.8.12) 제48조(농수산업법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)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업인 지원요건”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4. 용자금의 사용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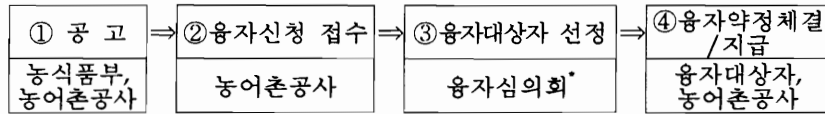
-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,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(종자대·비료대·농약대, 이하 “농장형”이라 한다)
-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·저장·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“유통형”이라 한다)
 - * 토지의 임차,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
- 농장형,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
- ※ 용자금 용도 세부내역은 대상자 선정 후 용자약정체결시 용자대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·확정

5. 용자 신청·접수

- 신청기간 : 2010.6.14(월)~6.28(월), 09:00~18:00(한국시간)
 - *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,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 18:00(한국시간)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(<http://www.oads.or.kr/main.jsp>)를 참조
- 접수기관 및 문의처 :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(031-420-4202)
 - 주소 :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30,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, 우편번호 437-703

6. 용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

- 용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용자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
 - 용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가 현지확인을 할 수 있음
- 결정여부 통보는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임
- 선정절차



- * 용자심의회는 1차 서류심사, 2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
- 면담은 사업계획 설명, 질의·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

- 용자금 지급방법 :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라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

7. 기타사항

-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
- 용자신청자는 용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, 현지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
 -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용자대상심사에서 제외
- 용자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면 용자금은 회수 조치되며,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
- 용자대상자 결정 후, 용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용자절차를 거쳐 용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용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용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
 - 용자 신청 후 용자결정 금액이 다를 경우 사업계획서(변경)를 제출
-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
-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, 편철하지 않을 것
-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